# **6** -8 노인 건강진단

# 1 목 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 3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단, 2024년 수검자 중 건강한 자 및 아래 대상자는 제외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하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부족한 검진항목은 노인건강진단항목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사업개요

#### 가. 사업의 연혁

- 1981년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 근거를 규정,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 실시
- 2005년부터 노인건강진단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나. 실시내용

- 진단수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를 준용 (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검진 - 관련규정 - 운영세칙 - 별표 2 검사 항목별 검사비용)
- 검사항목
- 노인건강진단 항목(참고1)에 의해 실시하되, 보건소장은 노인욕구 및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 조정 가능
- 위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을 적극 수검하도록 안내(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 성매개감염(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의료기관 검진자는 매독검사만, 보건소 검진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모두 가능. 다만,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소변검체로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만 실시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치매 조기검진, 안 검진, 암 검진 사업 등 다른 검진사업과 통합실시도 가능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외부의 검진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가능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성매개감염병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 지원
- 보건소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무료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연계
  - 필요시 선별검사 후 치매진단검사가 보건소와 협약한 거점병원에서 무료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을 발견 시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치매치료비(연 36만원) 지원

- 무릎관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통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보건소는 무료 안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통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보건소는 건강진단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 건강과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청사항

-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진단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노인건강진단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 보건소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확립하여 타검진과 연계 추진

## 실시계획의 수립

#### 가. 실시방침

- ▶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 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공공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는 등 노인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나. 실시 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1차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료기관은 매독검사만을, 보건소는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을 검사 한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할 것
- 1차 건강진단은 참고1의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채혈 등)에는 생략 가능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 다. 검진방법 및 절차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지역별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 허용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 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 사전준비 철저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 실시
- 한 검진기관에서 전 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검사, 치매검사 및 방사선촬영・ 판독은 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실시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보건소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 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
-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보건소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 단. 성매개감염병 유질환자의 경우는 개별 수검자도 검진결과를 보건소로 송부하고, 보건소는 수검자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

#### - 2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 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워 시 잔여 2차 검사 실시
- 2차 진단의 종합파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 (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 실시

#### ● 추가검진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 실시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 라 판정기준

- ◉ 노인건강진단기록부(서식-3)의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 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 2차 건강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 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 외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
- ◉ 2차 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 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 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상 : 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 :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 미정인 경우
- 요 양: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 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자가 요양 ○통원치료 ○입원치료 ○치료불능 ○기타

#### 마. 세부 실시요령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ol> <li>검진실시 준비</li> <li>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li> </ol>	(1)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2) [서식 1호] 및 [서식 2호] '노인건강진단 1·2차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 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1) 시·도는 (서식 3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2)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 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1)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ul> <li>(1)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li> <li>(2)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li> <li>(3)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li> </ul>	검진 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1)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리진인력 및 장비확보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일반 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 장소의 확보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3. 검진 실시	<ul> <li>(1)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li> <li>(2) 성매개감염병검사는 대상자의 희망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다(의료기관은 매독에 한정).</li> <li>(3)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 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li> <li>(4)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li> </ul>	검진기간 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1)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서식 3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 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한다. 다만,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환자의 경우 개별 수검자라도 검진결과를 보건소로 송부한다.	검진완료 후 10일 이내	검진기관
	(2)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 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다만,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 환자의 경우 보건소가 수검자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3)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 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 (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 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 관리	(1)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관리 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환자는 필요시 보건소가 추가 검사 및 치료를제공하고 만약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무료지원이가능한 기관에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군·구
	(2)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 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보 건 소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3)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의료기관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등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4)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하여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관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사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5)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노인과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1)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 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 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 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 수 있어야 함) 1부	검진완료 후	
	(2)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을 확인 한 후, 진단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계좌로 진단비를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인 후	시·군·구
	(3)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 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1)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 관리한다.		
	(2)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보

6

# 6

### 행정사항

#### 가. 실적보고: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보건소장은 [서식 4호] '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와 노인 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상반기는 7월 2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전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우선 고려

#### 나, 타 검진 사업과 연계

- 만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08년~)에 따른 건강진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
  - ※ 만66세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진단은 '07년부터 실시
  -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부족한 검진항목을 노인건강진단 항목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여 실시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결핵검진(무료)에 적극적으로 협조
  - \*\* 국내 신규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55.8%, 결핵 사망자 중 65세 이상 85.6% 차지('22년 기준)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개요〉

- 검진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노인, 재가와상노인(장기요양등급 3·4·5등급 판정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등
- 검진방법: 검진대상자가 있는 장소(경로당. 복지관 등)로 찾아가서 결핵검진 제공
- 사업주관기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 참여방법: 관할 보건소(결핵실)에 연락하여 검진대상 여부 및 검진 일정 문의
- 검진비: 무료

#### 다. 노인건강진단사업 미시행 자치단체 협조

▶ 노인건강진단 사업 미시행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동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협조 요망

## [참고 1]

## 노인건강진단 항목

구 분		<u>!</u>	진 단 항 목		
1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혈액검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를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기타검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주2))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인지선별검사(CIST)로 대체 가능) 4. 흉부 X선 간접촬영		
2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순환계	고혈압	1. 혈압, 2.정밀 안저 검사(양측)	3. 심전도 검사	
	질환	고지혈증	1. 혈압, 2.트리그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간질환		1. 총단백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5. 유산탈수효소(LDH)	<ol> <li>알부민</li> <li>총빌리루빈(총·직접)</li> <li>알파휘토단백</li> </ol>	
	신장질환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3. 크레아티닌	2. 요산 4. 요소·질소	
Ę		빈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 혈당(PPS)	
	안질환		1. 안압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2.각막곡률 검사	
	치매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낙상검사		1. 하지기능, 평형성		

주1)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

주2)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소변검체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만 실시